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 . .<br>(제 회)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윤호중<br>(행정안전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한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명칭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8월 14일까지로 연장하고,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핵추진잠수함 개발 및 핵추진체계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5급 7명, 6급 6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해당 사업단의 업무범위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을 핵추진잠수함 사업추진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방위사업청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6. 7. 29. ~ 8.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9년 8월 14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각각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한국형잠수함”을 각각 “핵추진잠수함 및 잠수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각각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2개”를 “4개”로 한다.

별표3은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관련)

1. 한국형전투기사업단(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             |   |
|-------------|---|
| 총계          | 4 |
| 일반직 계       | 4 |
| 고위공무원단      | 1 |
| 3급 또는 4급 이하 | 3 |

2. 핵추진잠수함사업단(존속기한: 2029년 8월 14일)

|        |    |
|--------|----|
| 총계     | 18 |
| 일반직 계  | 18 |
| 고위공무원단 | 1  |
| 5급 이하  | 17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6조( <u>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u> )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 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u>2026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u>한국형잠수함사업단</u> 을 둔다. | 제26조( <u>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u> ) ① -----<br>-----<br>-----<br>----- <u>2029년 8월 14일</u> -----<br>---- <u>핵추진잠수함사업단</u> ----<br>--- |
| ② <u>한국형잠수함사업단</u> 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② <u>핵추진잠수함사업단</u> -----<br>-----<br>-----<br>-----.                                                                              |
| ③ <u>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u>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u> ----<br>-----.                                                                                                |
| 1. <u>한국형잠수함</u>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1. <u>핵추진잠수함 및 잠수함</u> ----<br>-----                                                                                              |
| 2. <u>한국형잠수함</u>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 2. <u>핵추진잠수함 및 잠수함</u> ---<br>-----                                                                                               |
| 3. <u>한국형잠수함</u>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 3. <u>핵추진잠수함 및 잠수함</u> ---<br>-----                                                                                               |
| 4. <u>한국형잠수함</u>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계약관리                                                                                             | 4. <u>핵추진잠수함 및 잠수함</u> ---<br>-----<br>-----<br>---                                                                               |

④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  
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잠수함사  
업단에는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  
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  
14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잠수  
함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  
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  
다)은 2개의 범위에서 국방부령  
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  
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  
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  
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  
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

④ 핵추진잠수함사업단-----  
-----  
---.

⑤ -----  
-----  
----- 핵추진잠수함사업  
단-----  
-----  
---. -----  
-----  
-----  
-----.

⑥ -----  
-----  
----- 핵추진잠수함  
사업단-----  
-----  
-----  
---4-----  
-----.  
-----  
-----  
-----  
-----  
-----

할 수 있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
| 연 락 처       | (044) 205 - 2389 |